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47
----------	-------

발의연월일 : 2026. 4. 15.

발 의 자 : 이기현·신장식·임미애
박지원·모경종·최민희
홍기원·김 윤·정춘생
김주영·이용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노후 발전기를 정비하던 노동자들이 화재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해당 단지의 발전기들은 2005년 준공되어 이미 설계 수명인 20년을 넘겼으나, 현행법령에는 수명이 다한 설비의 가동을 제한하거나 철거를 강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풍력발전기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설비의 ‘보급’과 ‘설치’ 지원에만 법적 근거가 집중되어 있어 노후 설비의 정밀 안전진단이나 성능 저하 설비의 체계적인 교체·철거를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재생에너지 활성

화 사항뿐만 아니라 노후 설비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노후 설비의 수리·교체 및 가동 제한·중단, 철거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5호, 제10조제15호의2 및 제30조의4제1항·제2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46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
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5.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진단, 설비교체, 가동 제한·중단,
철거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의2.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진단 및 그 부품의 수리·교체,
가동 제한·중단 및 철거 지원

제30조의4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동상태 등을 조사”를 “가동상태 조사와 안전진단을 실시”로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
리 계획에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설비의 수리, 교체, 가동 제한·
중단 및 철거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2146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p> <p>제8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생략)</p> <p>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5. (생략)</p> <p>③ (생략)</p> <p>제10조(구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p> <p>1. ~ 15. (생략)</p> <p><u><신설></u></p> <p>16. (생략)</p>	<p>법률 제2146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p> <p>제8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진단, 설비교체, 가동 제한·중단, 철거 지원에 관한 사항</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구성된 사업비의 사용) ----- ----- -----.</p> <p>1. ~ 15. (현행과 같음)</p> <p>15의2. <u>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진단 및 그 부품의 수리·교체, 가동 제한·중단 및 철거 지원</u></p> <p>16. (현행과 같음)</p>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